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18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4. 8.

발 의 자 : 김승수 · 박충권 · 추경호
안상훈 · 서천호 · 강명구
엄태영 · 서범수 · 김정재
정동만 · 이상휘 · 김대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,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,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.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,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

로 제공하도록 하고,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).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8제4항 중 “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
2.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
3.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

제53조제2항 단서 중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”을 “친권자 등 법정대리인(이하 “친권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시청 지도 수단을 모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
2.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단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50조의8(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<u>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50조의8(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</u></p> <p>2. <u>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</u></p> <p>3. <u>제53조제2항에 따른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</u></p> |
| <p>제53조(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) ① (생략)</p> <p>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</p> | <p>제53조(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|

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·④ (생략)

----- . -----
-----친권자 등 법정대리인(이하 “친권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시청 지도 수단을 모두-----
----- .

1.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

2.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
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단

③·④ (현행과 같음)